

친분 없는 상사와 술자리 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유족급여 줘야'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직장 상사와 둘이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다 쓰러져 숨졌다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22일 직장 상사와 회식한 후 귀가하는 중에 쓰러졌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작년 3월15일에 숨졌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이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지시로 이뤄진 회식이 아니라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해, A씨 유족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사와 둘이서 회식했지만, 이 자리 역시 업무의 연속’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상사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 보여 ‘사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회식 자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래 이 자리엔 5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2~3차례 미뤄졌고, 다른 직원들을 대표해 A씨가 참석했다.”며 “상사가 다른 일반인보다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 A씨가 여기에 맞춰 마시던 중 불가피하게 과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조선일보)